
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

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의2 · 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」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868호)

○ 바닥충격음의 구분

경량충격음: 작은 물체 낙하, 하이힐 소리, 가구 이동 등 (측정: KS F 2810-1 / KS F ISO 16283-2, 표준충격원: 태핑머신)

중량충격음: 어린이 뛰기, 무거운 물체 낙하 등 (측정: KS F 2810-2 / KS F ISO 16283-2, 표준충격원: 뱅머신)

○ 등급 기준 (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별표 1)

등급	경량충격음 (L'n,AW, dB)	중량충격음 (L'i,Fmax,AW, dB)
1급	43 이하	40 이하
2급	43~48	40~43
3급	48~53	43~47
4급	53~58	47~50

○ 성능검사제도 (2022. 8. 4. 이후 사업계획승인 대상)

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(2022. 8. 4.)으로 경량·중량충격음 기준 기존 58dB/50dB에서 모두 49dB로 강화

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(사후확인제) 도입 — 시공 결과가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

측정대상 공간: 거실(또는 가장 넓은 공간), 마이크 높이 1.2m, 측정 위치는 벽면으로부터 0.75m(바닥면적 14㎡ 미만 시 0.5m) 이격

성능검사 기준 등급(ISO 717-2 평가): 1급 $L'nT,W \leq 37$ / $L'iA,Fmax \leq 37$, 2급 ≤ 41 , 3급 ≤ 45 , 4급 ≤ 49

성능검사 미달 시 바닥 또는 천장 보완시공 적용 가능

○ 출처 및 원문 확인

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%EC%A3%BC%ED%83%9D%EA%B1%B4%EC%84%A4%EA%B8%B0%EC%A4%80%EB%93%B1%EC%97%90%EA%B4%80%ED%95%9C%EA%B7%9C%EC%A0%95> 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

(국가법령정보센터)

<https://www.molit.go.kr> 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868호, 고시 검색: 국토교통부)

※ 본 자료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등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법령 개정 시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